

#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100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2. 9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대전발전연구원 경쟁력 강화방안에 의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함(안 제28조).
- 나. 대전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부 신설과 관련 전임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36조).
- 다.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함(안 제41조제3항).
- 라. 대전광역시 여성발전·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(안 제42조 및 제44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되었음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기타
 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 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 - (3) 입법예고 : 2006. 12. 1 ~ 12. 21 / 접수의견 없음

##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#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중 “소속기관·투자기관의 장(이하 “소속기관장 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소속기관·투자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
1.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복지증진,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사항
3. 여성기관·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4.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
2. 여성언론인
3. 여성·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4.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

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0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

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제34조제1항중 “당해 업무담당과장” 을 “여성가족청소년과장” 으로 한다.

제36조를 삭제한다.

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1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집행은 전년도 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.

③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보건복지여성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여성가족청소년과장
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
④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2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

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여성발전·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

“심의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3조를 삭제한다.

제44조제1항, 제46조, 제47조제1항, 제49조 및 제58조중 “심의회”를 각각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보건복지여성국장

2. 여성발전 및 모·부자복지 관련분야 종사자

3. 여성 또는 모·부자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5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제46조중 “업무담당사무관”을 “여성가족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중 “연1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48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52조제2항중 “업무담당국장”을 “보건복지여성국장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요보호여성의 선도·보호·단속업무 담당공무원

2.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

3.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3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제49조 “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”를 “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”

로 한다.

제1조중 “여성발전기본법” 을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지방자치법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호중 “모·부자복지법” 을 “「모·부자복지법」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중 “지방공무원임용령” 을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” 으로 한다.

제26조중 “대전광역시포상조례”를 “「대전광역시 포상조례」” 로 한다.

제59조중 “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 를 “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 로 한다.

제60조제2항중 “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 를 “「대전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” 로 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·복지기금운용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·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.

③(기금운용심의회 및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·복지기금운용심의회 및 대전광역시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(적극적 조치)</b>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소속기관·투자기관의 장(이하 “소속기관장 등”이라 한다)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8조(기능)</b>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·연구</li> <li>2. 여성관련 각종 정보자료 수집·분석</li> <li>3.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</li> <li>4. 여성기관·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</li> <li>5.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</li> <li>6. 필요시 시정 자문 등</li> </ol>	<p><b>제5조(적극적 조치)</b> -----</p> <p>----- 소속기관·투자기관의 장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28조(기능)</b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복지증진,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여성기관·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</li> <li>5.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
<p><b>제29조(구성 등)</b>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기타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</li> <li>2. 여성단체협의회장, 여성언론인</li> <li>3. 각급 여성·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</li> <li>4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li> </ol>	<p><b>제29조(구성 등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</li> <li>2. 여성언론인</li> <li>3. 여성·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</li> <li>4.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0조(임기)</b>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과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<b>제30조(임기)</b>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
<p><b>제32조(회의)</b>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34조(간사)</b>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<u>당해 업무담당과</u> 장이 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36조(전임계약직공무원)</b>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전임계약직공무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전임계약직공무원은 대전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연구경력을 갖춘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.</p>	<p><b>제32조(회의)</b>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4조(간사)</b> ①----- -----여성가족청소년과장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
<p><b>제41조(기금의 관리·운용)</b> ①기금의 예치, 관리 및 출납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②기금집행은 전년도 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.</p> <p>③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,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1조(기금의 관리·운용)</b> ①기금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집행은 전년도 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.</p> <p>③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 <p><u>제42조(기금운용심의회)</u>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발전·복지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1. 기금운용관 : 보건복지여성국장 2. 분임기금운용관 : 여성가족청소년과장 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42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u>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여성발전·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
<p><u>제43조(심의회의 기능)</u>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조성·관리·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기금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	<p><b>&lt;삭 제&gt;</b></p>
<p><u>제44조(구성)</u> ① <u>심의회</u>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여성 또는 모·부자복지업무 담당공무원</li> <li>2. 여성 또는 모·부자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li> <li>3. 여성발전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</li> <li>4. 모·부자복지 관련분야 종사자</li> <li>5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li> </ol>	<p><u>제44조(구성)</u> ① <u>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건복지여성국장</li> <li>2. 여성발전 및 모·부자복지 관련분야 종사자</li> <li>3. 여성 또는 모·부자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45조(임기)</b>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 및 관련분야 종사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<b>제45조(임기)</b>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
<p><b>제46조(간사)</b> <u>심의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<u>업무 담당사무관</u>이 된다.</p>	<p><b>제46조(간사)</b> <u>심의위원회</u>- - - - - ----- 여성 <u>가족청소년과장</u>- - -</p>
<p><b>제47조(회의)</b> ①<u>심의회</u>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<u>연1회</u>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47조(회의)</b> ①<u>심의위원회</u>- - - - - ----- 연 2회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8조(지원의 중지 및 회수)</b> 시장은 기금을 지원 결정된 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	<p><b>제48조(지원의 중지 및 회수)</b> - - - - 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~5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9조(위원장등의 직무등)</b> 위원장등의 직무, 의견청취, 운영세칙 등은 제31조, 제35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는 “<u>심의회</u>”로 본다.</p>	<p><b>제49조(위원장등의 직무등)</b> - - - - - ----- ----- ----- <u>심의위원회</u> - - 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2조(구성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2. 여성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</p> <p>3. 요보호여성의 선도·보호·단속업무 담당 공무원</p> <p>4.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<b>제5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보건복지여성국장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요보호여성의 선도·보호·단속업무 담당 공무원</p> <p>2.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</p> <p>3.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
<p><b>제53조(임기)</b>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및 단체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<b>제53조(임기)</b>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</p>
<p><b>제58조(위원장등의 직무등)</b> 위원장등의 직무, 의견청취, 운영세칙, 간사 등은 제31조, 제35조, 제37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와 “심의회”는 “협의회”로 본다.</p>	<p><b>제58조(위원장등의 직무등)</b></p> <p>심의위원회</p>

## 관계법령

### 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】

- 제6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9조 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**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
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
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·관·항으로,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·목으로 각각 구분한다.

**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】

**제4조 (기금의 수입과 지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**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